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88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김준형 · 최혁진 · 강경숙
정혜경 · 황운하 · 박은정
차규근 · 김형연 · 정춘생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책을 추진하고,”를 “정책을 추진하고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하며,”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를 “정당은 당원 정치교육·당원의 정예화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u>정책을 추진하고</u>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u>정</u> <u>책을 추진하고 당원 정치교육</u> <u>을 수행하며,</u> ----- ----- ----- -----.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u><신 설></u> ③ · ④ (생략)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당비) ① <u>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u>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1조(당비) ① <u>정당은 당원 정치교육·당원의 정예화와</u>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